

## 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송 승 주<sup>†</sup>

김 민 지<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체,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어 : 성폭력피해, 진술분석,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 전문가 증언, 질적 평가 기준

<sup>†</sup> 제1저자: 송승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sup>‡</sup>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최근 한국에서도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다양한 법심리학적 평가나 일반적인 심리평가의 필요성과 평가결과를 재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김상준, 2016).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요청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피의자, 재판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전문가의 의견은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재판에 활용된다. 법정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법적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보고서로 면담, 학교자료, 수사자료, 심리평가결과, 범임상적 평가결과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제출된다(Otto, DeMier, & Boccaccini, 2014).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심리학적 평가에는 피고인의 법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재범위험성 평가, 진술신빙성 평가, 범죄피해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물적증거나 목격자와 같은 인적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수사나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다(박지선, 강상훈, 2013).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에 비해 진술 능력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다(김한균 등, 2018). 이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해 진술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가 보고서의 형태로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된다.

국내외로 진술분석 평가도구 개발 및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지만(이창훈, 박미단, 2016), 전문가가 작성해 제출하는 진술분석 결과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즉 보고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한유화, 박광배, 2016). 심리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법심리학적 보고서나 일반적인 심리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사실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심리평가 보고서나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보고서는 작성한 전문가의 교육, 훈련, 경험 수준에 따라 보고서 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보고서나 일반적인 심리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지침들과 외국에서 개발된 진술분석 보고서 질적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의 질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진술분석

### 진술분석의 정의 및 평가도구

헌법 제27조 5항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

라,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해졌다. 진술분석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사건 관련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법으로 진술 내용에 기초해 그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법이다(한유화, 박광배, 2016; 김한균 등, 2018; 대검찰청 예규, 2019). 진술분석에 핵심으로 사용되는 진술 신빙성 평가절차와 도구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과학적 내용분석(Scientific Contents Analysis, 이하 SCAN),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이하 SVA),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 현실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이하 RM) 등이 사용되고 있다(이창훈, 박미단, 2016; 이미선, 2018). 이중 진술타당도분석(SVA)은 주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이미선, 2018).

진술타당도분석(SVA)은 진술의 근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Köhnken, 2004). 진술타당도분석(SVA)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진술확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이나 현실모니터링(RM)과 같은 분석도구를 활용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술의 내용분석과 면담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타당도 체크리스트(Validity checklists)의 3단계로 진행된다(이미선, 2018).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은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19가지 준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며(조은경, 2004), 현실모니터링(RM)은 7개의 진실 준거와 1개의 거짓 준거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스스로 만들어 낸 기억에서

기인한 진술을 구분한다(이승철, 2013).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경찰청, 의탁병원과 같은 운영기관의 4자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을 활용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모니터링(RM) 적용을 고려하는 등 분석관의 역량에 따라 두 도구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경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1.26). 외국의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진술타당도분석(SVA)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진술타당도분석(SVA)의 주요 도구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ezdek et al., 2004). 예를 들어, 성폭력 상황은 아동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되기에 아동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때 실제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의 점수가 낮아져 거짓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Pezdek et al., 2004). 결과적으로 진술타당도분석(SVA)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로 인정될 만큼의 정확성은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Vrij, 2005).

#### 국내 진술분석의 활용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해 직접증거를 찾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죄가 있어도 자백하지 않거나 피해 아동이 사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협박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조은경, 2004).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피

해자의 진술이 범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경찰의 경우 2005년에 여성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부터 진술분석 제도를 도입했고(박주상, 2007),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해졌다(김한균 등, 2018). 2021년 현재, 전국 39개소에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세 종류의 해바라기센터가 설치 및 운영 중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5.28). 경찰에서는 진술분석 의무참여 대상자를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보고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13세 이상 아동 혹은 장애가 등록되지 않은 지적,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진술분석이 실시되고 있다(경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1.26).

검찰에서는 2004년에 『성폭력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해 최초로 진술분석을 적용하였고, 이후 2006년에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실무팀을 만들며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김한균 등, 2018). 대검찰청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에 규정된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 외에도 성폭력 사건 중 PTSD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진술분석을 시행해 왔으나, 사건의 폭증으로 부득이하게 법률에 규정된 대상만 분석하게 되며(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2.12), 현재 성폭력 사건의 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조회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분석 업무는 주로 경찰단계에서 진술분석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으나, 신빙성 분석에 관한 인식 증가와 함께 법원에서도 전문심리위원에게 추가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일이 증가하였다(홍유진, 김시업, 2017).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도에서 2020년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는 성폭력 발생 건수 중 진술분석 참여 건수는 평균 약 3천 건이었으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와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014년도에서 2020년도 아동 성폭력 사건 전체 발생 시 진술분석 참여 건수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평균 약 1,700건이었고,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의 경우 평균 약 240건이었다. 또한, 2014년도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1,284건이었으며, 2015년도 이후부터는 진술분석 실시 시 장애등록자와 장애의심자를 구분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2015년도에서 2020년도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1명의 진술분석관이 한 해에 약 36.58건(진술분석 참여건수 평균:3,439.17/전문가현황 평균:94)의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 비해 현재의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와 달리 전문가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표 2에 제시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성폭력사건 전체 발생건수 중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평균 연간 약 280건이었으며, 1인당 분석 건수는 평균 73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분석 건수가 1명의 분석

표 1. 경찰청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및 진술분석 참여 현황

연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전체)	진술분석 참여건수	전문가 현황	13세 미만 성폭력 발생 건수	참여건수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	참여건수	
					13세 미만	13세 이상		장애 등록	장애 의심
2014	29,517	2,969	-	1,161	1,529	156	927	1,284	
2015	30,651	3,171	99	1,267	1,661	308	857	877	325
2016	28,993	2,893	107	1,083	1,700	281	807	795	117
2017	32,234	3,452	101	1,261	1,724	264	785	1,260	204
2018	31,396	3,577	101	1,277	1,731	227	836	1,410	209
2019	31,396	3,988	86	1,374	2,119	233	804	1,438	198
2020	29,496	3,554	70	1,082	1,850	229	776	1,236	239
평균	30,697.83	3,341.67	-	1,215.00	1,759.14	242.57	827.43	-	-

주. 출처: 2020.11.23., 2021.03.10. 정보공개청구요청, 2020.11.26., 2021.03.22. 경찰청 자료제공  
\*장애범위: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표 2. 검찰청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및 진술분석 참여 현황, 유죄선고 현황

연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전체)	진술분석 참여 건수	1인당 분석 건수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접수대비 기소율(%)	1심 유죄선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접수대비 기소율(%)	1심 유죄선고	
					징역형	벌금형		징역형	벌금형
2014	-	-	-	46.6	464	40	36.2	371	14
2015	31,063	231	57	42.8	450	30	34.7	356	16
2016	29,357	295	75	39.2	413	17	32.4	286	17
2017	32,824	289	72	39.3	460	24	33.1	322	11
2018	32,104	321	81	44.0	446	38	30.5	326	8
2019	-	291	78	37.3	413	40	30.6	296	13
평균	-	-	-	41.53	441.00	31.50	32.92	326.17	13.17

주.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2020.06.01. 정보공개청구요청, 2020.06.12. 대검찰청 자료제공.

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임 분석관(supervisor)이 감독하게 되는 모든 보고서를 합산한 수치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2를 보면, 2014년도에서 2019년도 전국 13

세 미만(아동)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41.53%였고, 장애인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평균 32.92%였다. 대검찰청에서는 모든 성폭력 사건에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 아니라 법과학분석과 과장과 지정 2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합의를 통해 분석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대검찰청 예규, 2019), 성폭력 사건 전체 발생 건수에 대비 실제적인 진술분석 참여건수 간에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1년에 감당해야 하는 진술분석 보고서 대상 사건의 수에 비해 전문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되지 않았다(홍유진, 김시업, 2017). 문제는 전문가가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진술분석 참여건수가 많을수록 전문가가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질이 낮은 결과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17고단1506판결에 따르면, 진술분석 전문가가 매일 약 2~3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과중한 업무상황으로 인해 기계적이고 형식적 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분석 보고서의 신빙성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민희, 이승진, 2019).

#### 진술분석 전문가의 역할 및 능력

아동 증언의 핵심은 아동이 성인의 기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다(박지선, 강상훈, 2013). 학계에서는 아동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진술 능력이 있다는 주장과 성인에 비해 아동의 진술능력이 떨어지기 때

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두 측면으로 나뉜다(곽금주, 이승진, 2006). 진술능력에 관한 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이수정, 유진옥, 2009). 아동 또는 지적장애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면담자나 주변인의 영향에 취약해 피암시성이 높고 진술 시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이수정, 2011). 그러므로 정확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술분석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신중하게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적으로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동의 증언을 방해하는 발달적 특징, 성숙 정도, 언어 표현방법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동 진술을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곽금주, 이승진, 2006). 또한, 지적장애인은 공간적 정보, 세부적 정보에 대해 일반인 못지않게 풍부한 진술이 가능하므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 적절한 면담기법을 사용한다면 정확하고 완전한 진술의 수집이 가능하다(이수정, 유진옥, 2009).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는 점진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되, 단서를 제공한 이후에도 진술하지 못할 시엔 면담을 종료해야 한다(이미선, 조은경, 2015). 더불어 진술분석 전문가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을 평가할 때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의학적 증거, 행동증상, 피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 및 신체적 증거 등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조은경, 2004). 아동은 간접적으로

언은 지식과 실제 사건을 분리하지 못하고 정보의 출처를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Pezdek et al., 2004).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진술만을 분석할 경우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점수가 높아 아동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오해석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진술을 평가할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Pezdek et al., 2004). 또한, 정확한 진술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평가대상자 특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진술분석도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조은경, 2004).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각 기관에 제출된 전체적인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진술분석 보고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진술분석 전문가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의 생활환경, 인지능력을 이해했는지 여부와 함께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적인 추론과정의 명확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요청했는거나 평가의 내용에 상관없이 보고서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의심받게 되면, 앞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를 의뢰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는 심리학자들의 법정 증언이나 평가 의뢰와 같은 다양한 활동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법정에서의 증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재판부나 형사사법기관과 같은 외부에서 판단하는 심리학 전반에 걸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례

아동이 과거와 현재, 단수와 복수 등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의 자기중심성, 인지능력, 언어표현 능력의 한계, 진술이 비일관적인 등 아동 증언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아동 능력은 실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법관계자의 아동 심리나 정서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혜숙, 2005). 박상기(2016)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보름스 아동 성학대 재판에서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심리학적 감정 결과, 아동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외부의 암시에 의한 진술로 판단하여, 보름스 사건을 계기로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법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신빙성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리학/신경정신의학 전문가의 개입을 허락하였다. 또한, 가설추론적 진단, 투명성과 사후검증 가능성, 일관성, 독자성, 인지적 능력분석, 진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설명, 동기에 대한 분석 등 감정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판시하였다.

국내 법정에서는 아동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두루 존재하며, 아동 혹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증언 능력과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중요사항에 대해 판시한다. 아동의 증언능력에 관해 진술자의 연령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별적 지적 수준에 따라 진술의 태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진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이 피해 상황을 식별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성범죄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 가능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이나 기억의 출처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사건발생일과 진술일자 간의 시간적 간격, 피해 사실 최초 진술 상황에서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유도적 질문의 반복 여부 등으로 인한 아동 기억의 변형 가능성, 또래 아동 진술의 영향 여부, 자발성,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의 일관성, 세부 묘사의 풍부성,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61027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판결).

지적장애인은 타인의 성적 접촉을 폭력이 아닌 관심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신호를 오인하거나,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이상미, 김태경, 2015; Fisher, Baird, Currey, & Hodapp, 2016), 어휘력 부족과 기억력의 한계 등 인지적 미숙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암시성이 높고, 사건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묵인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범죄피해 및 성범죄 피해에 취약하다(Gudjonsson, & Henry, 2003; 이지영 등, 2018; 이미선, 2020). 지적장애인은 자발적 폭로율이 낮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사실 여부나 동기를 의심받게 되는 등 사법기관이나 가족에게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이상미, 김태경, 2015). 국외에서 실시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범죄피해 비교 결과,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6배 높았으며(Fogden, Thomas, Daffern, & Oglhoff,

2016; 이지영 등 2018), 묵인적 특징과 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할 때 암수 피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조사 진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건 조력을 위해 힘써야 할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의 경우조차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등급을 고려한 조사가 미흡한 등 법실무자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미, 김태경, 2015; 이지영 등, 2018).

법관 개인의 신념,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판결도 존재하는데, 1심에서는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양상 자체에 집중하여 진술이 자발적이고 일관적이며, 비언어적 행동이나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용인하여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4989판결). 지적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양형 및 감경사유를 분석한 연구결과,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형범위 내의 하한선에 가깝게 판결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양형범위에 미치지 못한 판결도 분석한 사건의 약 30%인 등 법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해자의 감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이미선, 정주은, 2020). 이처럼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진술 가능성, 자유회상 여부, 기억의 출처, 정신적 연령, 사건 발생 시점의 경과, 피암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며(김민희, 이승진, 2019), 전문가가 작성하는 진술분석 보고서는 전체적



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법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이미선, 2021).

공정식과 류경희(2017)는 국내 판례 연구를 통해 법원에서의 아동과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의 오염 가능성, 진술의 폭로 시점과 경위의 5가지로 요약하며, 독일의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 가설추론적 진단, 사후 검증가능성 등은 판시되어 있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앞선 판례들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 피해 사건 판결에 있어 법관의 개인적 판단의 위험성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과 지적장애 피해자의 특성을 알고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전문가 즉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가 판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 실무자가 전문가 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제출된 보고서가 과학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질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

외국 법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권고 및 지침

Rebecca와 Ronald(2015)는 외국 법정에서 제출되는 전문가 보고서 및 전문가의 법정 증언 시 법임상전문가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

했다. 첫째, 전문가의 편향적 사고로 인한 오해석, 녹취록 혹은 영상기록물과 같은 비대면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평가자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전문가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평가대상자와의 대면평가에서의 정확성(accuracy)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법 실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둘째, 진술로부터 의견이 도출되는 추론과정을 기록하고, 종합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사법 실무자가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심리학적 지식이 부족한 판사, 변호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쳐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Otto 등(2014)은 범임상적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가 포함해야 할 보고서의 내용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평가 도구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가 평가를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대상자에 대한 이력 등의 기본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평가결과가 대상자의 범임상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문가가 추론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여 최종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문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만약 사용할 때는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과장되거나 편파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완전한, 항상’ 등과 같은 단정적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나 비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은 전문단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담당 전문가가 의학적 진료, 심리적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고서 작성, 법

정진술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 정신과협회(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0)는 임상 의(clinician)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의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의 평가 목적을 설명하고, 심리검사, 면담, 법의학 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문가가 갖춰야 하는 역량, 면담 장소에 대한 언급,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점, 성폭력 피해 주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판단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 의가 성폭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훈련이 부족해 진단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검사, 병력,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위험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 평가를 위한 개괄적, 일반적, 절차적 지침들을 제시했다. 특히 절차적 지침에서 심리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심리학자가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에 따라 전문가가 범죄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내용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내용 등을 알리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보고를 위한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확실히 제시된 경우에만 전문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진단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적 충실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렇듯 법심리학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심리학자들과 전문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심리학적, 법임상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지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리학

적 지식이 없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작성된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상자 정보나 전문가의 정보 등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현재 능력을 평가하는 추론과정이 올바르게, 최종적인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등 보고서에 필수적 내용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제출된 보고서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작성된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고서가 작성된 목적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의뢰하는 심리학 적 지식이 없는 법 실무자가 보고서의 질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 그 반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는 이러한 기준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들을 확인했는지 여부나 결과추론을 위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과 질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

외국의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평가에는 형사사법 절차마다 매우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도 아동학대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임상경험을 쌓아야 한다(Frasier & Makoroff, 2006).

사법기관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도한 다수의 연구결과, 대체로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질적으로 매우 상이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obins, Waters & Herbert, 1997; Skeem, Golding, Cohn & Berge, 1998; Christy, Douglas, Otto & Petrla, 2004; Robinson & Acklin, 2010; Otto et al., 2014).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존재하나 보고서 작성 시에는 누락된 내용이 많았다는 점, 둘째로 전문가가 법이나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로, 평가결과와 법심리학적 개념과의 연결성, 즉 추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정 분야의 매뉴얼들은 존재하나 제출된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나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법원은 법과학적 증거는 표준적인 검사 기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는 전제가 입증되고, 학계에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법과학적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하고 오류 가능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법관이 인정할 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판결). 전문가의 과학적인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위를 소지하거나

직위에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오랜 경력이 있는가를 평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김면기, 2018),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적 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보고서 자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문가가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적합하게 갖추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즉, 형사사법관계자는 심리학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작성된 보고서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된 보고서인지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제출된 보고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박종선, 2013; 김상준, 2016). 예를 들어, 재판과정에서 진술분석 보고서가 증거로서 인정되어 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와 판사 두 집단의 판단근거가 다르고 평가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등 보고서의 질적인 중요성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선, 2013). 이는 법 실무자가 아동 및 심리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법심리학적 보고서에서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건 시 진술 특성, 폭로의 과정, 심리적 증상 등을 수용하는 관점이 법원마다 다르고 일관되지 않아 아동 성폭력 의심 사건에 대한 평가 시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실제적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 진술의 특성, 행동적 특징, 아동 진술평가와 관련된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언급 등을 포함한

질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Lindblad & Lainpelto, 2008). 이에 스웨덴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전문가 보고서를 평가할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한유화, 박광배, 2016). 따라서 증가하는 진술분석 시행과 제출되는 보고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 기준이 없다. 판사, 검사 등은 법과 판례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은 할 수 있으나, 법심리학적 측정 및 평가에 익숙하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과정에 대한 이해나 심리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다양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질적 수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실무자들이 제출된 보고서에서 누락사항이나 사전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범임상적 의견, 추론 등이 문제없이 또는 빠짐없이 기술된 후 제출되었는지 사법실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Gumpert, Lindblad와 Grann(2002)에 의하면 성폭력이 의심되는 사건발생 시 전문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웨덴 건강복지부(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제시한 지침(guidelines)이 있으나, 이 지침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사항일 뿐 실제 작성된 보고서에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이하 SQX-12)’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공식적인 측면 5문항과 내용적인 측면 7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0~2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 진술분석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질적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

표 3. Gumpert 등(2002)이 개발한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의 세부 기준

	팀 평가
공식적 측면	아동 발달에 대한 능력 평가
	아동-평가자 사전접촉여부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전문가의 임무에 대한 기술
	성적 확대에 대한 내용
내용적 측면	성적 확대의 맥락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아동의 생활환경
	대안적인 해석
	진술구조
	전반적인 질적평가

지만, 국가별로 진술분석 대상자의 범위, 환경, 법률, 보고서의 형식 등이 다르기에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의 질적 평가 기준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법 실무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된 내용이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의 근거가 논리적이고 적절했는지 여부 등 보고서의 질을 가늠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는 보고서 작성 시 또는 의뢰기관에 제출하기 전 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들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진술분석 대상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의뢰기관에 따라 진행방식이나 보고서 양식이 달라 일부 세부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스웨덴에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umpert 등(2002)이 아동 진술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QX-12)를 재분석하고, 앞서 논의된 외국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서 SQX-12를 기초로 몇 가지의 세부적인 기준들은 수정 및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SQX-12의 개발목적은 아동 성폭력 피

해자를 대상으로 진술분석의 결과를 담은 전문가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의무대상자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의뢰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3세 이상 청소년과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의심자까지도 진술분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경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1.26) 진술분석 대상자를 ‘아동’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자’로 칭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웨덴의 질적 평가 기준은 공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범주가 구분되어 있으나, 기존 범주로는 국내에서 질적 평가 기준을 활용하게 되는 법 실무자와 전문가가 이 기준들 중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각 사항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핵심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요인, 평가대상자 요인, 평가결과 요인의 세 개의 범주로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SQX-12의 기존의 문항 중 ‘팀 평가’에 대한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SQX-12의 ‘팀 평가’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절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한 전문가의 모든 이름과 직위 등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팀 평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보고서를 다른 전문가가 검토하거나 다른 제2의 전문가가 별도로 동일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한 명의 전문가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어 대안적인 해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국 브랜든 메이필드(Branden Mayfield)의 사례(Stacey, 2005)는 법과학적 증거 분석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팀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2004년에 발생한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의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해 FBI를 포함한 총 4명의 지문전문가가 브랜든 메이필드의 지문이라고 일관된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그 지문이 다른 용의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필드(Mayfield) 사례는 유명한 사건을 처리한다는 외부의 압력, 잘못된 맥락정보, 지문전문가들 간에 대안적인 해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의 평가를 신뢰했던 안일함 등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 제 3자에 의한 확인 또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각 전문가의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박중선, 2016; 김면기, 2018). 또한, 때에 따라서는 보고서의 주 평가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채 다른 전문가나 상급 전문가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최종 완료된 보고서를 의뢰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이름과 소속을 기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진술분석 진행 상황상 복수 전문가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검찰의 3인 평가 체제와 달리 경찰, 법원에서는 팀평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는 등 기준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복수 전문가가 참여할지라도 동료 전문가에 대한 과한 신뢰가 오히려 면밀한 분석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만약 앞서 제안한 대안처럼 전문가 정보의 삭제를 통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동료전문가의 독립적 평가 및

상급 전문가에 의한 감수와 같은 팀평가는 보고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되므로 기존의 SQX-12와 같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과정은 제출된 보고서에는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보고서에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의 이름과 소속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반대신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가독성 평가는 따로 분리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질적 평가’란 전체적인 보고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전의 평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앞서 외국의 범법상적 보고서 작성을 위한 권고 및 지침에 전문적인 용어나 함축적, 부정적, 단언적 언어 사용을 지양해야 함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Otto et al, 2014; Rebecca & Ronald, 2015),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평가와 보고서의 가독성은 분리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의 진술분석 보고서 양식에는 자료의 출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경찰청 공개정보청구, 2020.11.26), 평가대상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형사사법기관에서 평가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평가 시 습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평가대상자나 신뢰관계인에게 자세히 고지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과정 및 보고서 제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평가대상자가 평가목적 이해하고 면담 시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다 (Borum & Grisso, 1996; Skeem et al., 1998; Robinson & Acklin, 2010). 그러므로 평가대상자의 보호자 혹은 신뢰관계인에게 적절한 동의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서술하거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진술분석이 실제 평가대상자를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경찰관이 조사 시 진술분석 전문가가 편면경을 통해 동석하거나 진술서 혹은 경찰과 대상자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기록,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대상자 또는 부모와 같은 신뢰관계인에게 적절하게 고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나 전문가가 평가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질적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보고서에 평가대상자의 권리고지 관련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거나 동의서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질적 평가도구인 SQX-12를 바탕으로 위의 보완사항을 결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국내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 기준은 전문가 요인, 평가대상자 요인, 평가결과 요인의 세 개의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기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 요인에는 1) 작성된 보고서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검수나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 전문가들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 4.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질적 평가 세부기준

팀평가	
전문가 요인	전문가의 역량 평가
	평가대상자-전문가 사전접촉여부
	전문가의 임무에 대한 기술
평가대상자 요인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성범죄피해 최초보고(폭로)의 맥락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평가대상자의 생활환경
평가결과 요인	성범죄피해에 대한 내용
	대안적인 해석
	진술구조(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가독성
전반적인 질적평가	

확인하는 팀 평가, 2) 전문가가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수준, 관련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았는지, 임상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기술 혹은 윤리교육과 같은 증빙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 역량평가, 3) 진술 분석을 위한 면담 이전에 전문가와 평가대상자가 만난 적이 있어 사전정보로 인해 편향적인 평가를 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대상자-전문가 사전 접촉 여부, 4)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한 기관과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평가 목적을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의 임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평가대상자 요인에는 1) 전문가와 대상자가 접촉한 시간, 장소, 평가일시, 보고서 작성일과 같은 평가상황, 사건기록과 같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전달 받은 제3정보 등 정보의 출처나 목록을 기술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2) 대상자가 성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거나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범죄피해 최초보고(폭로)의 맥락, 3) 대상자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4) 대상자의 사회적 및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 독자가 전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대상자의 생활환경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평가결과 요인에는 1) 평가대상자의 피해경험에 대해 전문가의 해석이나 분석이 아닌 평가대상자가 설명한 내용을 기술하고, 평가대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인용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범죄피해에 대한 내용, 2) 평가대상자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전문가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비판적이고 사려깊게 분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대안적인 해석, 3)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전문가가 설명, 기술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자료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내는 추론과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진술구조(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4) 보고서에 사용된 언어가 함축적이거나 ‘항상, 언제나’처럼 단언적이거나, 부정적인지 혹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가독성, 5) 전체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심리전문가가 아닌 형사사법관계자가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기준을 아울러 전체적인 보고서의 질이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전반적인 질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의 질적 평가 기준은 각 세부기준에 하, 중, 상으로 정의된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상’의 개수가 많은 보고서일수록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 논문이 보고서의 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보고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것에 있기에,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는 전문가와 법적 판단에 활용하는 판단자의 개인적 역량, 경험, 지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의 개수 그 자체보다도 결과의 전달과 의사소통에 있어 보고서 내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본 기준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Gumpert, Lindblad, & Grann, 2002). 구체적인 기준과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결언 및 제언

국내의 진술분석은 전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 피해자와 같은 의무 참여대상자와 사법기관의 판단하에 만 13세 이상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의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진술분석 현황을 보았을 때, 전체 성범죄 사건대비 실제 진술분석 실시 비율은 약 9%로 매우 낮다. 대검찰청의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의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로 진술분석 의무참여대상자에서 성인피해자가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진술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부족해 보이고, 판례에서도 전문가 업무의 과중성을 들어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이처럼 진술분석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면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가 분석해야 하는 사례수가 증가해 전반적인 보고서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법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절하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제도에 제출되고 활용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대상자와의 면담 및 진술 전반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심리학적 지식이 없는 법 실무자들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심리전문가들도 보고서의 질을 가늠하고 유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문가가 관련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할 지라도 해당 사건을 다루며,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주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법률적 또는 윤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의 충실성, 논리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질적 평가 기준은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적 충실성, 즉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결과추론의 과정이 명료하게 제시된 후 제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으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보고서 질적 평가 기준에 충실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보고서에 담긴 전문가의 최종 의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질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가 신뢰로운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고려했는지 여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성, 논리성, 치밀성, 신중함을 보였는가, 그리고 편향을 최대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추론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강우예(2017)는 미국에서는 사회과학적 증거 판단 시 Daubert기준이나 Frye기준을 적용하여 검사 도구의 적절성이나 과학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출된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우예(2020)는 미국과 국내의 형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법적 판단에 적용하는데 가치 판단적이고 사회 맥락적인 성격의 연성과학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반대신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보고서가 검증을 거치지 않고 법정에 제시되면 적절한 평가과정을 통해 의견제시가 이루어졌는지, 부정확하게 기술된 내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실제적 진실 발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신문권에 대한 보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진술분석 전문가는 질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진술분석 보고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증거능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한 최소 요건들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여 법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가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법정 증언을 하게 될 때 전문가 증언에 대한 논리성과 내적일관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언하는 전문가가 쟁점을 이해하는 정도, 쟁점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서의 신중함과 조심성, 사고의 치밀성, 전문가의 의견 형성과정의 편향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전문가가 어떻게 그러한 의견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전문가가 타당한 반대신문에 대해 솔직하게 직면하거나 보고서 또는 전문가로서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안적 해석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문가의 보고서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실시과정, 전문가 증언 및 보고서의 내용과 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 연구결과, 치료를 위한 임상적 평가와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적 평가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심리평가결과와 같이 임상적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법적 개념에 적용하는 부적절한 추론과정을 거치거나, 법적 개념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Robbins et al., 1997; Christy et al., 2004; Robinson & Acklin, 2010). 또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질이 초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보고서의 질이 형사사법관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Nicholson & Norwood, 2000). 이에 법심리학 보고서의 핵심은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 법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유무죄 판단, 양형판단과 같은 법적인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법심리학적/법임상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활동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의 보고서나 법정 증언이 법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심리학적 평가 지침들을 포함해 진술분석 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가 사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보

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지침, 기준, 표준 마련은 좋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기관이나 학회와 같은 전문기관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형식이나 교육과정이 존재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나 법정 증언 내용에 대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객관적 지표에 의해 진술분석의 과정,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Gumpert et al., 2002; 한유화, 박광배, 2016). 또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서 분석 및 작성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진술분석 보고서가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감소할 것이고, 사실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형사사법기관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에 대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질적 평가 기준은 연구자가 국외 지침, 권고 사항, 심리학 연구서, 판례, 법학 논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하향적 평가 방식을 통해 구성되었으나, 평가 기준을 제안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질적 평가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논

의과정을 거치거나, 평가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를 조사하거나, 법원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나 증언에 대한 고찰과 같은 상호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Duits, Hoorn, Wiznitzer, Wettstein, & Beurs, 2012). 하지만 기준에 법정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은 평가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보고서의 연구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받지 못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보고서 분석을 통한 평가는 추후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법정에 제출되는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제안된 기준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 타당화 작업을 통해 제안된 기준의 실제적 적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우예 (2017).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4, 199-232.
- 강우예 (2020). 피고인에게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진술의 증거법적 성격과 의미. *형사법연구*, 32(4), 171-205.
- 공정식, 류경희 (2017). 아동과 지적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국내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1-24.

-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 김면기 (2018). 과학적 증거의 판단기준과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0(3), 205-239.  
<https://doi.org/10.36999/KJC.2018.30.3.205>.
- 김민희, 이승진 (2019).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3, 272-302.
- 김상준 (2016). 법과 심리 과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형사법학과 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기여의 관점에서. *형사법 실무연구* 133집, 서울: 법원도서관, 317-387.
- 김지영, 최수형, 이권철, 이진국, 김강원, 최정규 (20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57.
- 김한균, 윤해성, 박윤석, 김면기, 유승진, 정교일, ..., 차종진 (201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91.
- 대검찰청 (2019). *대검찰청예규*.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304&bcIdx=985772>.
- 박상기 (2016).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독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4(1), 197-219.
- 박종선 (2013).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 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41, 86-117.
- 박종선 (2016).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 대검예규 ‘진술분석 규정’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2), 257-276.
- 박주상 (2007). 경찰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4(1), 105-128.
- 박지선, 강상훈 (2013). 성범죄 피해 아동의 기억력 및 증언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피해자학연구*, 21(1), 163-189.
- 이미선 (2018).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 67-83.
- 이미선 (2020).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법*, 11(2), 211-239.
- 이미선 (202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1-13.
- 이미선, 정주은 (2020).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3), 67-94.
- 이미선, 조은경 (2015). 경찰의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한국경찰연구*, 14(4), 377-402.
- 이상미, 김태경 (2015).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진술양상. *한국장애인복지학*, 30, 237-255.
- 이수정 (2011).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5(1), 111-138.
- 이수정, 유진욱 (2009).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특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찰연구*, 9(2), 161-184.
- 이승철 (2013).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이 진실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CBCA와 RM의 활

- 용.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도
- 이창훈, 박미단 (2016). 진술분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종합모델. *한국범죄심리연구*, 12(2), 95-120.
- 이혜숙 (2005).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증언 능력에 대한 연구. *교육실천연구*, 4(2), 141-161.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79-9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05. 28).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90&srch\\_menu\\_nix=13vdU8Xo#tab5](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90&srch_menu_nix=13vdU8Xo#tab5).
- 한유화, 박광배 (2016). 한국진술분석 활용현황: 서유럽국가들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7(3), 137-156.
- 홍유진, 김시엽 (2017).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진술의 확보와 분석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4), 285-320.
-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0). Guidelines for the Clinical Evalu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Sexual Abuse. Retrieved from [https://www.aacap.org/aacap/policy\\_statements/1990/Guidelines\\_for\\_the\\_Clinical\\_Evaluation\\_for\\_Child\\_and\\_Adolescent\\_Sexual\\_Abuse.aspx](https://www.aacap.org/aacap/policy_statements/1990/Guidelines_for_the_Clinical_Evaluation_for_Child_and_Adolescent_Sexual_Abuse.aspx).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Evaluations in Child Protection Matters. *American Psychologist*, 68(1), 20-31.
- Borum, R., & Grisso, T. (1996). Establishing standards for criminal forensic reports: An empirical analysi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 the Law*, 24(3), 297-317.
- Christy, A., Douglas, K. S., Otto, R. K., & Petrila, J. (2004). Juveniles Evaluated Incompetent to Proceed: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Evaluatio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4), 380-388.
- Duits N, van der Hoorn S, Wiznitzer M, Wettstein RM, & de Beurs E. (2012). Quality improvement of forensic mental health evaluations and reports of youth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5, 440-444.  
<https://doi.org/10.1016/j.ijlp.2012.09.018>.
- Fisher, M. H., Baird, J. V., Currey, A. D., & Hodapp, R. M. (2016). Victimization and Social Vulner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Review of Research Extending beyond Wilson and Brewer. *Australian Psychologist*, 51(2), 114-127.  
<https://doi.org/10.1111/ap.12180>.
- Fogden, B. C., Thomas, S. D., Daffern, M., & Ogloff, J. R. (2016). Crime and victimisation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case linkage study. *BMC psychiatry*, 16(1), 1-10.
- Frasier, L. D., & Makoroff, K. L. (2006). Medical evidence and expert testimony in child sexual abuse.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57(1), 41-50.
- Gudjonsson, G. H., & Henry, L. (2003). Child and adult witness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importance of suggestibilit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2), 241-252.

- Gumpert, C. H., Lindblad, F., & Grann, M. (2002). A systematic approach to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in cases of alleged child sexual abuse. *Psychology, Crime & Law*, 8(1), 59-75
- Köhnken, G. (2004). *Statement Validity Analysis and the 'detection of the truth'*. In P. Granhag & L. Strömwall (Eds.),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Forensic Con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blad, F., & Lainpelto, K. (2008). When superior courts reach different conclusions in the same child sexual abuse cases - is there a lesson to be learned?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5(3), 171-187.
- Nicholson, R. A., & Norwood, S. (2000). The Quality of Forensic Psychological Assessments, Reports, and Testimony: Acknowledging the Gap Between Promise and Practice. *Law and Human Behavior*, 24(1), 9-44.
- Otto, R. K., DeMier, R., & Boccaccini, M. (2014). *Forensic Reports and Testimony: A Guide to Effective Communication for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John Wiley & Sons.
- Pezdek, K., Morrow, A., Blandon-Gitlin, I., Goodman, G. S., Quas, J. A., Saywitz, K. J., & Brodie, L. (2004).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t Familiarity Affects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1), 119-126.
- Rebecca, J., & Ronald, R. (2015). *Learning Forensic Assessment: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Robbins E., Waters J., & Herbert P. (1997). Competency to stand trial evaluations: a study of actual practice in two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Psychiatry and the Law*, 25(4), 469-483.
- Robinson, R., & Acklin, M. (2010). Fitness in paradise: Quality of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Hawaii judiciar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3(3), 131-137.
- Skeem, J, L., Golding, S, L., Cohn, N, B., & Berge, G. (1998). Logic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s of Competence to Stand Trial. *Law and Human Behavior*, 22, 519-547.
- Stacey, R. B. (2005). Report on the erroneous fingerprint individualization bombing case. *Forensic Science Communications*, 7(1). Retrieved from [https://archives.fbi.gov/archives/about-us/lab/forensic-science-communications/fsc/jan2005/special\\_report/2005\\_special\\_report.htm](https://archives.fbi.gov/archives/about-us/lab/forensic-science-communications/fsc/jan2005/special_report/2005_special_report.htm).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3-41.
- 1 차원고접수 : 2021. 05. 31.  
심사통과접수 : 2021. 07. 29.  
최종원고접수 : 2021. 07. 30.

## **Korean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s and Testimony**

**Seungju Song**

**Min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atement analysis is a technique tha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analysis report is prepared, submitted, and used for legal judgments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under 13 years of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evidence nor eyewitnesses. Howe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a statement analysis report or testimony are not available in Korea. Although forensic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provid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forensic assessment reports,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studies for forensic report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missing or poorly described essential information and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forensic opinions. Therefore, forensic evaluation guidelines and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 developed in Sweden were examined to suggest the Korean version of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 and testimony. This criteria can be us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rensic reports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used as a guideline to assess the quality forensic reports or expert testimony prepared by experts. However, this criteria do 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tself.

*Key words : sexual abuse, statement analysis, forensic evaluation report, expert testimony, qualitative evaluation criteria*

## 부 록

###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질적 평가 기준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의 질적 평가 기준은 전문가 요인 4문항, 평가대상자 요인 4문항, 평가결과 요인 5문항으로 총 13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준들은 하, 중, 상으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상'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판단자의 개인적 역량, 경험, 지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상'의 개수가 많음을 평가하는데 집중하기보다 본 기준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충실성, 논리성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 전문가 요인

#### 1. 팀평가

팀 평가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 절차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된 모든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하) 보고서에 서명한 전문가 이외의 다른 전문가는 언급되지 않았음.
- (중)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심리 평가나 유사한 절차에 대한 위탁(referral)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탁된 평가/절차를 진행한 전문가의 이름이나 직위가 기재되지 않음.
- (상) 명확히 한 명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는 것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되어 있음.

#### 2. 전문가의 역량 평가

전문가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수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에 대한 훈련, 경험이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내용 기술 혹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팀평가가 수행된 경우에는 팀 내부의 통합된 경험/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하) 전문가가 평가 업무와 관련해 훈련받은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음.
- (중) 전문가는 예를 들면, 심리학과 같이 관련 분야에서 학술적인 훈련을 받았음.
- (상) 전문가는 관련 분야에서 학술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평가대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는 점을 기술함. 대안적으로, 전문가는 다른 방법으로 관련된 훈련/경험을 제시할 수 있음.

### 3. 평가대상자-전문가 사전 접촉 여부

사전 접촉은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성범죄피해 관련 현재의 평가와 관계없이 이전에 전문적인 환경에서 평가대상자와 만났을 경우를 의미한다. 전문가의 편향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평가대상자 사이의 사전 접촉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 본 평가 이전에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이전의 심리 평가 등과 같이 평가대상자와 심도 있는 접촉이 이루어짐. 또한, 평가대상자가 정신과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치료를 받는 중 성범죄피해가 알려진 사례가 해당됨.
- (중) 전문가는 성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사례 외의 다른 이유로 1~2회 평가대상자와 접촉하였고,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상) 성범죄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평가를 이유로 전문가와 평가대상자의 접촉이 처음 이루어졌고,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4. 전문가의 임무에 대한 기술

전문가의 임무란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한 기관(법원, 검사, 경찰)과 어떤 평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지 확인한다.

- (하) 평가를 요청한 기관이나 누가 평가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중) \*\*지방경찰청, \*\*지청의 검사, \*\*지방법원과 같이 누가 평가를 요청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 (상) 누가 평가를 요청했는지와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 II. 평가대상자 요인

### 5.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전문가와 평가대상자가 접촉한 시간, 평가상황(장소, 평가일시, 보고서 작성일시), 평가대상자에 대한 이전 심리검사 자료, 병원기록 등 평가에 사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나 목록을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 (하)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 또는 평가대상자와의 접촉 시간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지 않음.
- (중)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일부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만, 평가대상자를 언제, 몇 번 면담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완전하게 기술되지 않음.
- (상) 정보의 종류와 같이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명시되어 있음. 평가대상자와의 면담 횟수 및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6. 성범죄피해 최초보고(폭로)의 맥락

평가대상자가 성범죄피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첫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 (하) 평가대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처음으로 성범죄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음.
- (중) 평가대상자가 성범죄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같이 성범죄피해와 관련해 특정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부족하며, 성범죄피해 관련 내용이 어떻게 진전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상) 평가대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성범죄피해를 공개했는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성범죄피해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음.

### 7.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평가대상자가 이전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가자가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는지를 평가한다.

- (하) 발달상태, 인지능력 또는 언어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음. 평가대상자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의견은 0으로 평가함.
- (중) 평가대상자의 부분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만, 심리평가결과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기술 내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평가대상자에 관한 내용이어야 함.
- (상) 평가대상자의 발달상태, 인지능력 또는 언어능력 등을 고려함. 심리평가결과 또는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정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8. 평가대상자의 생활환경

평가대상자의 가족, 또래 관계, 학교 상황, 생활조건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환경이 되는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했는지 확인한다.

- (하) 평가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관련해 사회적, 심리적 상황 정보가 없음.  
평가대상자의 상황에 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은 존재하지만, 성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를 공개했을 당시 평가대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
- (중) 성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를 공개했을 당시 평가대상자의 생활환경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음.

## III. 평가결과 요인

### 9. 성범죄피해 대한 내용

전문가의 해석 또는 분석 없이 성범죄피해에 대해 평가대상자가 설명한 내용을 기술했거나 직접 인용하였는지 확인한다.

- (하) 평가대상자가 성범죄피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음. 보고서만을 토대로 평가대상자가 어떠한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중) 평가대상자가 성범죄피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제시했지만, 평가대상자가 설명한 내용을 직접 기술하지 않음.
- (상) 평가대상자가 성범죄피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평가대상자의 표현을 인용함.

## 10. 대안적인 해석

평가대상자의 주장 및/또는 행동에 대해 다른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전문가가 정보를 비판적이고 사려깊게 분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하) 대안적인 해석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음. 유일한 근거로 아동 자신의 경험 여부에 대한 진술만을 제시함. 제기된 성범죄피해가 사실인지 여부,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한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중) 평가대상자의 주장 및/또는 행동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그 해석이 왜 지지되는지, 아니면 지지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논의하지 않음.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 1점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자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및/또는 행동한 이유에 대해 최소 두 가지의 대안적 설명
- (상) 을 제시함. 각각의 경쟁적인 대안적 해석을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의해 어떠한 사실이 각각의 해석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지 설명함.

## 11. 진술 구조(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전문가의 설명을 기술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자료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내는 추론과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 (하) 자료의 제시와 자료에 대한 해석을 분리시키지 않음. 자료에 대한 의견이 단순히 사실과 섞여 있음.
- (중) 진술서에는 특정 구조가 존재하지만,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와 본문의 어떤 부분이 전문가의 분석인지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면밀하게 읽어야 하는 등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존재함.
- (상)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전문가의 해석/의견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술함. 본문의 어떤 부분이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자료를 해석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확함.

## 12. 가독성

평가보고서에 함축적, 단언적(예를 들어, 항상, 언제나),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 여부나 전문용어의 사용빈도,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명확하고 쉬운 단어의 사용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하) 보고서에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함축적, 단언적, 부정적인 언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보고서의 가독성이 낮음.
- (중) 보고서에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설명이 빈약하고, 함축적, 단언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보고서의 가독성이 중간 정도임.
- (상) 보고서에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전체적인 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음.

### 13. 전반적인 질적 평가

심리전문가가 아닌 사법 실무자가 제출된 보고서를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기준을 아울러 전체적인 보고서의 질이 우수한지 평가한다.

- (하) 보고서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짐.
- (중) 보고서의 전반적인 질이 중간 정도임.
- (상) 보고서의 전반적인 질이 좋음.